

改正된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食品衛生法施行規則改正案이 1975년 7월 8일자로 보건사회부령 제483호로 개정, 公布됐다. 食品衛生法施行規則의 主要改正內容은 ① 條件附 許可 節次를 規定 ② 施設基準 引上 ③ 包裝基準 設定과 表示基準 및 誇大廣告規制 強化 등이다. 公布한날로 부터 施行發効될 이 施行規則改正案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調 査 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제 1 호 단서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두 부류(건조분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나” 및 “라”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중 “나”, “다”, “아”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바”목중 “제 22 호”를 “제 23 호”로, 동호 “차”목중 “실제 사용한 색깔의 명칭”을 “실제의 색깔 명칭”으로, 동호 “파”목중 “진각 항목”을 “가북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 소명(수입품에 있어서는 그 수입품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 소명과 수입자의 영업소의 소재지 및 영업소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판매업소명을 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 다만, 별표 2 중 제 1 호 · 제 3 호 · 제 7 호 · 제 10 호 · 제 11 호(유산균 음료를 제외한다). 제 12 호 내지 제 14 호 · 제 17 호 · 제 19 호 · 제 23 호의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의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 21 호중의 우유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아.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유”, 다류에 있어서는 “다류식품”, 또는 혼성식조의 구별과 혼성식 조

에 있어서는 양조식조 및 합성식조의 혼합 비율하. 별표 2 중 제 4 호(파자는 제외한다), 제 15 호 · 제 16 호 및 제 18 호 식품에 있어서는 그 식품의 열량.

제 5 조제 1 항제 2 호중 “진호”를 “제 1 호”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진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제 5 조의 2 의 제목 “(과대광고의 범위등)”을“(과대광고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 1 항제 9 호 및 제 10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 11 호 및 제 1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 2 항제 6 호중 “진각호”를 “제 1 호 내지 제 5 호”로 한다.

9.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인모형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도안·음향등을 사용하는 저속한 광고

11.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제 1 호 내지 제 11 호 이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제 6 조제 2 항중 “진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제 7 조제 2 항중 “진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제 9 조제 2 항중 “진항”을 “제 1 항”으로 하고, 동조제 3 항중 “진항”을 “제 2 항”으로 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 2 (임김회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연 2회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
장·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 “진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9조중 “제 6 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장은 그 진단을 받은
자에게 건강진단증을 교부한다. 건강진단 및 건강
진단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제 3 항의 건강진단증은 발급일로부터 6월간 지
역의 제한없이 그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제 2 호중 “진호”를 “제 1 호”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법 제23조의
2”로 한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 (조건부 영업허가의 시효등)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
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다만, 6월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
에는 그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 회에 한하여 6
월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영 제12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여
부 확인기간은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20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
지사인 경우에는 14일,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7일
로 한다.

제27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23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한 조건부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영 제12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

여부확인결과 그 조건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지
체없이 제 2 항의 조건부영업허가증을 제 1 항의 영
업허가증으로 대체 교부한다.

제28조제 1 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 2 항중 “진
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제31조제 1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 1 항중 “진조”를 “제31조”로 하고 동항 후
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78 사과산”, “79 사과산나트륨”, “200
탄산칼륨”, “232호 박산나트륨”을 각각 “78dl- 사
과산”, “79 dl-사과산나트륨”, “200 탄산칼륨(무
수)”, “232호 박산 2나트륨”으로 하고, “2442-(2-
후틸)-3- (5-나트로 2-후틸) 아크릴산아미드”
를 삭제하며, 251. 내지 25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1. 글리실리친산 2나트륨.

252. 글리실리친산 3나트륨.

253. 스테아릴젖산나트륨.

254. 카아복시메칠스타아치나트륨

(전분글리코올산나트륨)

255. 피치산.

256. 제 3 인산칼륨.

【별표 2】의 2 중 “(진조, 분말류에 한한다)”를 삭
제한다.

【별표 4】의 품명란중 “포리아크릴산나트륨” 다
음에 “카아복시메칠스타아치나트륨”을 삽입한다.

【별표 7】 1의 제목중 “다과점영업”을 “양과점영업
· 지방영업”으로 하고, 동호의 (13)·(14) 및 (18)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의 (17) ①중 “음
식점영업 및 다과점 영업”을 “음식점영업 · 양과점
영업 및 지방영업”으로 하고, 동호의 (20) 중 “다
과점영업의 경우 직접 제조하여”를 “양과점영업 ·
지방영업의 경우 직접제조 또는 조리하여”로 한다
(13) 빈소의 바닥 및 벽은 타일 · 콘크리트 등 내
수성자재로 신설하여야 하고 창구등에는 방서 ·
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기타적정한 설비를 하
여야 한다.

(14) 빈소는 남녀구별이 따로 되어 손님이 사용하

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 된 충분한 수를 설비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 위생적인 변소시설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거나, 역광장·배스정유소 또는 유원지 등에 설치된 부대시설(변소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점영업·양과점영업·다방영업허가를 받을 때에는 변소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18) 양과점영업·다방영업의 경우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별표 7】 중 1의 (8)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2의 (4)를 삭제한다.

【별표 7】 3의가 (12)중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수도전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1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이상의 지역으로서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고 하수시설이 있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업장 소중 식품가공업(임가공형태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역상폐기물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7】 3의가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화학적합성품인 칩가물제조업소로서 제조공정 및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천정, 벽의 구조, 창문, 출입구등의 방충·방서설비와 원재료 및 기구·용기등의 세척 설비에 대하여 (2) 및 (5)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 3의나중 “(1) 빙과제조업”을 “(1) 아이스크림류제조업”으로 하고, 동 (1)의①중 “50평방미터”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 잇류제조업의 ①중 “50m²”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3) 두부류제조업의 ①중 “5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하고 ②중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여파기·가열솥·두유저장조·성형상자”를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진공)

여파기·진공솥·두유저장조·성형상자·운반상자·두부침수탱크”로 한다.

【별표 7】 3의나 (7) 가공유제조업의 ①중 “100m²”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8)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제조업의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작업장에는 원료저장시설·계량시설·용해시설 포장시설 및 유화시설 이외에 다음의 시설을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원료처리시설 :

원유저장조·탈산처리시설(중화용장치)·중화용저장조·수세용시설·운수조·진공탈색조(매진공장치)·탈취시설.

냉각시설 :

각종원료유저장조·유용성첨가제용해조·수용성첨가물용해조·각종 유지류 및 첨가물 계량기·혼합유화조·관질기·고압이송펌프·급냉동정열기·숙성기·자동포장기·자동충진기 및 병동기.

【별표 7】 3의 나(11) 어육연제품제조업의 ①중 “50m²”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13) 다류제조업의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2종류까지는 150평방미터이상이므로 하고 1종류 추가시마다 50평방미터를 추가한다.

【별표 7】 3의나 (13) 다류제조업의 ②중 “홍차류”를 다음과 같이하고 “분말다류”중 “채별기”를 삭제한다.

홍차류: 생산지처리시설과 포장가공시설로 구분한다.

(가) 생산지처리시설에는 각각 구획된 위조실·유념실·사분실·발효실 및 건조실과 질단기·유념기·선별기 등.

(나) 포장가공시설은 건조기·제품질단기, 선별포장기 등.

【별표 7】 3의나 (13) 다류제조업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7】 3의나 (14) 청량음료제조업의 ②중 “150 미리터”를 “190미리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15) 첨가물제조업의 ①중 “120m”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17) 식초제조업의 ②중 “합성식초”를 “합성식초 또는 혼성식초”로 하고 ③에 “혼성식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성식초·양조식초·합성식초별로 각각 제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별표 7】 3의나 (18) 영양강화식품의 ①중 “120m”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0) 식용얼음제조업의 ①중 “120m”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2)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①중 “50m”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4) 전포류제조업의 ①중 “30m”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5) 식품가공업의 ①중 “30m”를 “임가공형태의 경우는 30평방미터 기타의 경우는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 3의나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보존음료수제조업

- ① 작업장의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작업장에는 세병시설·충진시설·공관타진기 및 기타 제품제조에 필요한 각종설비가 있어야 한다.

【별표 7】 4의 가중 (4)를 삭제한다.

【별표 7】 9의 (1)중 “취급량에 따른 상당한”을 “100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별지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제12호 서식】중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3조의 2로 한다.

【별지제13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영업소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의 2서식)

()조건부영업허가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허가조건:	년 월 일까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
식품위생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식품(첨가물)영업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0201-1-17A (190mm×268mm)
 1970. 5. 25승인 신문용지 50g/m²

토막知識

開發途上國

DAC, 世銀, UNCTAD 등의 統計에 開發途上國 또는 發展途上國 (Developing Country)이라 나와 있는데 國際的으로 定義되거나 基準이 있는 것 아니다.

1960年 UNDP 事務局長 “호포단”은 1人當 GNP 300달러 以下라고 定義했지만 假令 產油國所得이 急增하여 300달러 以上이라고 하여 先進國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대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특히 開發이 늦은 나라를 後開發途上國 (Least Developed Country)라고 하는데 UN은 이를 다음 3項目 모두에 該當하는 나라로 定義하고 있다.

- ① 1人當 GNP 100달러 以下
- ② 製造業이 GDP 전체의 10% 以下
- ③ 15歲 以上の 文盲率이 20% 以上인 나라로 돼 있다. <調査部>